

지난 수차례 실무협약이 “진전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이번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2015년 실무협약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실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이 합의되면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가장 큰 현안인 어업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일 것임.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오해 및 합의에 따른 영향 진단

- 지난 수차례 실무협약이 “진전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이번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2015년 실무협약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실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
- » 특히 현재 한중 양국 간 서해에서의 해양경계 미획정에 따른 심각한 분쟁이 발생되어 “당사국 간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와 명분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임.
- » 일부는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어업 문제가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한국의 입장인 “중간선 원칙”을 중국이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갖고 있음.
- » 이러한 견해는 최근 들어 한국 해경과 중국 불법어선 간 충돌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더욱 고착되는 경향을 보임.
- » 심지어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근해를 포함시킨 조치를 마치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보는 오해를 나타냈음.
-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이 합의되면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가장 큰 현안인 어업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일 것임.
- » 예를 들면 합의 이후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아닌, 새롭게 획정된 한국 EEZ로 중국 어선이 허가 없이 넘어와 조업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어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장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것임.
-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 획정 합의 시 중국은 이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갈등을 갖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게 평소 강조한 양자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언어적 구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는 인식을 선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임.

전망과 과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때에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에 합의하여 이를 지역 해양협력의 modality로 삼아야 함.
- 그 동안 한·중 해양문제를 너무 부정적 현안으로만 보아 양국 관계 발전의 독(毒)으로 간주되는 곡해가 있었음.
- 이제는 그 동안의 한중 해양문제에 대한 “무지(sea blindness)”를 극복하고,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손익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양국 지도자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야 함
- 궁극적으로 서해 해양경계 획정 문제는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에 있어 약(藥)이 되어야 하며, 다가 오는 우리 다음 세대가 “평화로운 서해”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cp.i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CHINA WATCHING



2015년 한·중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약: 독(毒)인가 약(藥)인가?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5. 3. 30 <제3호>

정책 제언

서두르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 한중 간 해양경계 미획정에 따른 실익을 보고 있는 중국이 서두를 이유는 “거의” 없음.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이 미합의된 상황에서 서해상 어업문제가 양국 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해결방안 강구에 있어 비교적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서해에서의 해양경계 획정은 기본적으로 UN해양법협약상 형평에 맞는 해결책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UN해양법협약상의 원칙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충돌 보다는 협력에 비중을 두어야 함.

- 한중 양국 간 해양갈등 요인이 국가주권 및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과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어업, 환경, 과학 조사 및 자원개발 등의 부수적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상호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임.
- 무리한 충돌을 야기시키기 보다, 기존의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상호보완적 협력에 비중을 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갖고 회의에 임해야 함.

양자간 문제로만 다루어 제3자 현안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서해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약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동시에 서해를 대륙동맹 대 해양동맹이라는 지정학적 대결로 전환하게 해서는 아니 됨.

실무협약에서 결정하기 보다 정상 간 정치적 판단으로 넘겨야 함

- 이러한 해양분쟁은 타결이 간단치 않은 바, 해결책의 핵심은 양국 지도자의 해양 리더십에 달려 있음.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및 해양을 중시하고 있음. 실무진은 타결보다는 손익(損益) 대차대조표를 준비하는데 그쳐야 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서해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약이 대륙동맹 대 해양동맹이라는 지정학적 대결로 전환하게 해서는 아니 됨.

이러한 해양분쟁은 타결이 간단치 않은 바 실무진은 타결보다는 손익(損益) 대차대조표를 준비하는데 그쳐야 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문제 제기

2015년 “의미”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성공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이루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2015년은 양국 정상 집권 3년차 해(年)로서 그 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던 각종 “선언” 및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시켜야 하는 원년

2014년 7월 초 양국 정상이 정상회의에서의 “2015년에 양국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의를 가동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2015년 1월 29일에 해양경계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가 추진되었음

2015년 한중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의를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독(毒)이 아닌, 약(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현재 한국과 중국은 냉전적 산물인 부정적 요인들을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발전과제들을 양국 간 경제적 교류 및 외교적 협력에 접목시킴으로써 성공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이루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 2015년은 양국 정상 집권 3년차 해(年)로서 그 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던 각종 “선언” 및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시켜야 하는 원년으로서, 양국 정부는 올 한 해를 이러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국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 간에, 경기활성화, 향유하는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전통적 운명 공동체 공간 증대에 피부로 접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함.

■ 한편 2014년 7월 초 양국 정상이 정상회의에서의 “2015년에 양국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의를 가동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2015년 1월 29일에 해양경계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가 추진되었음. 그 동안 서해(약 38만km²)에서의 해양경계(EEZ 및 대륙붕) 획정 협상에서 나타난 양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 》 공동: 국제법 기본원칙, UN해양법협약 준수, 상호존중의 원칙.
- 》 중국: 형평의 원칙 주장, 그러나 지리적 요소, 지질적 요소, 어업 및 역사적 권익 등에 의한 비례성 (proportionality) 등을 우선 고려.
- 》 한국: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남서해안에 중간선 도출을 위한 적절한 기점이 설정될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 한중 해양경계 획정 실무협의를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독(毒)이 아닌, 약(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서해(黃海) 의미

■ 양국을 지리적으로 격리시킨 서해(황해)는 1894년 중국 지도부가 최초로 청일 전쟁 시의 압록강 해전과 황해 해전에서 일본에 의한 패전을 목격한 해역으로 중국 인민과 지도부에게 일종의 “역사적 부담”을 주는 민감한 해역임.

■ 서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이 적용되는 해양방어 제1도련 이내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와 달리 해양영유권(territorial disputes)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획정을 남겨 놓고 있음.

■ 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영토분쟁이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임에 합의하였으며, 해양경계 미획정에 따라 발생한 어업문제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두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 이어도 문제는 실질적 양국 해양관할권 중첩수역 범위에 있으나, 지리적으로 한국에 중국 보다 가깝고 한국의 EEZ 및 대륙붕에 속하며, 동시에 중국 측의 EEZ 및 대륙붕에도 속해 있음.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이 설정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임.

서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이 적용되는 해양방어 제1도련 이내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획정을 남겨 놓고 있음.

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영토분쟁이 아닌 해양경계 획정 문제임에 합의하였으며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합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과 제83조 3항을 들어 “한국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당사자 간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라며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2007년 수리남과 가이아나 간 중재사건 판결문 등에서 밝혔듯이 주변 해역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 중국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이어도 주변 해역은 한중일 3국 어업협정이 아닌 한중 양국 간의 어업협정 상 현행조업유지수역이어서 중국 어선은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이들 어선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수역임. 반면, 이어도 수역은 거리가 멀어 한국 어선이 조업을 많이 하는 수역이 아님.

》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시 가상 중간선을 어떤 식으로 확정해도 이어도 해역이 중국 측 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주변 해양환경에 물리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아님.

■ 중국 불법어업 문제는 서해에서의 해양환경 오염, 어족 자원 고갈 및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양자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중국 행정당국의 의지와 조치가 점차 증대되는 등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군사적으로 서해는 중국과 인접된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북한 간 수차의 소규모 해전(skirmish)이 발생되었고 한미 해군간 연합해상훈련이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해역으로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해역임.

■ 서해는 주변 각국의 전략공간이 되고 있음.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국,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려는 일본, 분리독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진출의 돌파구인 아세안 그리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경유지인 인도양과 연결되는 시발점임

해양경계 획정 합의와 목표

■ 1994년에 비준되어 1996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접한 반폐쇄해에 적용되었으나, 당사국 간 해양경계 획정이 합의되기 이전에 이들 3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 개정, EEZ법 그리고 EEZ 및 대륙붕법 제정 등 국내법을 정비하였으며, 이들 간 마무리하지 못한 역사적 부담까지 접목됨으로써 해양경계 획정은 일종의 “판도라 박스”로 간주되고 있음.

■ 중국은 중국 제1도련 방어선의 시작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연장선인 한반도 서해(황해)에서의 해양경계 합의를 중국과 주변국 간 “조화로운 해양(harmonious sea)”을 이룬 대표적 성공 사례로 시현하고자 희망함.

》 현재 중국이 주변국과 체결한 유일한 해양경계 획정은 중국과 베트남 간 통킹만에 대한 해양경계 획정임. 그러나 그 후 15년 동안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고 한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합의를 통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게 양자간 해양경계 획정의 성공적 사례로 보이려 할 것임.

■ 한편 한국은 북한과 해양으로 가까이 인접된 서해에서의 중국과의 해양경계 합의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위한 결정체(catalyst)로 부각되기를 기대하여 일본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파급효과로 나타나길 희망함.

중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시 가상 중간선을 어떤 식으로 확정해도 이어도 해역이 중국 측 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서해는 주변 각국의 전략공간이 되고 있음

중국 서해(황해)에서의 해양경계 합의를 중국과 주변국 간 “조화로운 해양(harmonious sea)”을 이룬 대표적 성공 사례로 시현하고자 희망함.

한국은 중국과의 해양경계 합의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위한 결정체(catalyst)로 부각되기를 기대